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법 제81조제1항제1호바목을 적용할 때 투자자 보호 및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해당 상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0까지 투자하는 행위

제25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0조제1항제4호의3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의2. (생략) <u><신설></u>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① ----- ----- ----- -----.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u>법 제81조제1항제1호바목을 적용할 때 투자자 보호 및 거래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해당 상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0까지 투자하는 행위</u>
5. ~ 12. (생략) ② ~ ⑪ (생략)	5. ~ 12. (현행과 같음) ② ~ ⑪ (현행과 같음)
제252조(운용특례)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80조제4항 및 제8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1조제1항 단서 및 제234조제4항에 따	제252조(운용특례) ① ----- ----- ----- -----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② (생략)	----- ----- -----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80조제1항제4호의3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동일 종목의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u>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연 락 처	(02) 2100 - 2664